

서울재판클럽 간담회 건의사항 검토의견

과제번호 1		통상임금 정의 및 계산방법
관련부처 담당자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서유리 사무관(044-202-7547)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 <input type="checkbox"/>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 및 노사정 합의('15.9)를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정의요건을 명확하게 제시 <input type="checkbox"/> 전합판결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input type="checkbox"/> 노사발전재단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겠음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통상임금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 <input type="checkbox"/>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무 철폐	
관련부처 담당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강검운 서기관(044-202-7544)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조건외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신뢰보호, 사용자의 자의적 계약 변경 방지를 위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철폐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li> </ul> <p><input type="checkbox"/> 법 개정과 별개로 지난 '15.9월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지침 발표('16.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지침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얻도록 하되,</li> <li>- 노동조합 등이 동의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li> </ul>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3	유급휴가 금전보상 금지	
관련부처 담당자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최승훈 사무관(044-202-7546)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유급휴가 금전보상을 폐지한다면, 연차휴가 활용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휴가를 가지 못하면서 보상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연차휴가 소진률 저조('12년 46.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취업규칙은 근로관계의 주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므로,  ○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신뢰보호 및 사용자의 자의적 계약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  <input type="checkbox"/> 노사 스스로 현행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금전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연차휴가 소진률을 제고할 필요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휴가 사용률 제고 등 일하는 방식 및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캠페인 및 홍보 실시(연중)  <input type="checkbox"/> 휴가 활성화를 위한 모델 개발. 확산(연중)
	추진완료 예정일	'16년 12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일가양득” 캠페인 및 장시간근로 개선 홍보 지속 전개, 휴가 모델 개발. 확산 추진(연중)

과제번호 4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관련부처 담당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박영 서기관(044-202-7574)	
검토의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p>□ 기간제 사용기간은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므로 제도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p> <p>* 야당·노동계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축소(2→1년)하거나 결원대체 등의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자는 입장(사용사유제한)</p> <p>* 사용기간 연장(2→4년) 법안은 18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p> <p>○ 다만, 정부·여당은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 의사를 감안, 현행 2년 사용기간 제한원칙은 유지하되</p> <p>- 35세 이상 근로자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개정안 제출('15.9.16, 이인제의원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p>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설득 등을 통한 입법 노력지속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5	<b>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b>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는 부과취소 혹은 감액결정이 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명문화)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장태희 사무관(044-215-4152)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인용과는 다른 처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내용 수용시, 재조사는 사실상 인용과 유사하게 됨</li> </ul> <input type="checkbox"/> 재조사는 당초 처분의 적법성을 재조사하라는 것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결과에 따라 인용뿐만 아니라, 기존 처분유지 또는 변경된 처분도 가능</li> </ul> <input type="checkbox"/>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시 행정소송이 가능하도록 하여(14년 법개정)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및 국세행정 효율화를 도모</li> </ul>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6	국제거래정보 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송혜영 사무관(044-215-4422)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현행 개정 법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p> <p>* ① 화재·재난 및 도난 발생,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입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④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p> <p>○ 필요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이 가능</p> <p>⇒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제출의무자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승인을 해주도록 과세관청*에게 협조 요청할 계획</p> <p>* 관할세무서장이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p>과제번호 7</p>	<p><b>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인정기준 완화</b></p> <p>① 일본계외투법인에대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기준 완화</p> <p>② 본국에서 파견된 외국인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기준 완화</p> <p>③ 차량운행기록 작성시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구분이 어려운 현실 고려</p> <p>④ 사유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기준 적용 배제</p>	
<p>관련부처 담당자</p>	<p>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대연 사무관(044-215-4221)</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p>	<p>①②③ 수용곤란, ④ 현행충분</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기준은 외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p> <p>○ 외투기업 또는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완화시 국내기업 등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발생</p> <p>○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기준은 법인 소유의 승용차만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도 개인의 사유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p>
<p>추진계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과제번호 8</p>	<p><b>과세관청에 의한 세무조사실무 개선</b></p> <p>① 조사과정에서 불충분한 조사로 인해 과세된 경우, 담당 조사관 뿐아니라 상사의 인사고과에 반영</p> <p>② 세무조사 후 독립부서의 담당자가 조사대상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담당자의 부당행위 및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설문조사해 주시기 바람</p>
<p>관련부처 담당자</p>	<p>국세청 감사담당관실 황남욱 서기관(044-204-2602)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구종본 사무관(044-204-2713)</p>
<p>검토의견</p>	<p>검토결과</p> <p>기수용</p>
	<p>검토내용</p> <p>① 조사과정에서 불충분한 조사로 인해 과세된 경우, 담당 조사관 뿐아니라 상사의 인사고과에 반영</p> <p><input type="checkbox"/> 조사과정에서 불충분한 조사로 과세한 후 조세 불복청구에 따른 행정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 결정된 경우,</p> <p>○ 개별 감사를 통하여 불복인용의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담당조사관을 문책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도 문책 중임</p> <p>② 세무조사 후 독립부서의 담당자가 조사대상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담당자의 부당행위 및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설문조사해 주시기 바람</p> <p><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종결후에 독립성이 보장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대상기업에 대하여 불만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 중임</p>
<p>추진계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p>
	<p>추진완료 예정일</p> <p>-</p>
	<p>추진일정</p> <p>-</p>



과제번호 9	<b>관세 경정과 수정신고 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b> (수입자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관련 규정 명확화)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김동원 주무관(044-215-4246)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 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5조)을 개정 한 취지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input type="checkbox"/>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성실신고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한 것임  <input type="checkbox"/> 다만, 건의사항(수입자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도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관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10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과 관련하여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을 유지(3배)하거나, 강화하더라도 적용 유예 기간 부여할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송혜영 사무관(044-215-4422)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기존 3배수 적용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강화(2배)</p> <p>○ 또한 최근 OECD 국가들이 자국의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p> <p>* 호주는 '14년 법개정을 통해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을 종전 3배에서 1.5배로 조정하여 제도를 보다 강화</p> <p><input type="checkbox"/> 또한 국내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차입금 배수기준을 3배에서 2배로 인하한 것이므로, 동 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11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개정	
관련부처 담당자	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손용석 주무관(02-2100-3628)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 곤란
	검토내용	<p>□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정비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과세 자주권 강화를 위하여 협의*를 거쳐 특례를 배제한 것으로 국가 정책적 사항</p> <p>* 중앙. 지방간 자원조정 대책('13.9)</p> <p>○ 지방세특례의 정비방침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감면폭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p> <p>- 외국인투자법인에 한해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 신설은 다른 법인과 의 형평성 등을 비교시 수용 곤란</p> <p>○ 특히, 지방세 감면은 일종의 조세특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 결정되어야 하며,</p> <p>- 법에서 정한 절차 이외의 방식에 의한 감면요구는 원칙적 수용 불가</p> <p style="text-align: center;"><b>&lt;지방세 감면 수립절차&gt;</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행자부) 지방세 감면기본계획 수립→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p> <p>* 외국인투자 감면 : 연간 345억원('14년 결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조특법 §121의2)</p> </div>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12	국세의 정상가격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경정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송혜영 사무관(044-215-4422)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현행 충분	
	<p>검토내용</p> <p><b>&lt;관세→국세 경정청구&gt;</b></p> <p><input type="checkbox"/> 「국조법」 제10조의2①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대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변동된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된 국세의 과세표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임</li> </ul> <p><input type="checkbox"/> 또한, '14.11.23. 「국조법」 제10조의2②을 개정하여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은 관세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음</p> <p><b>&lt;국세→관세 경정청구&gt;</b></p> <p><input type="checkbox"/> 「관세법」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대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경정처분 또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APA)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된 국세의 과세표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임</li> </ul> <p><input type="checkbox"/> 또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관세가격 경정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음</p> <p>*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p>과제번호 13</p>	<p><b>최저한세율 인상 억제</b></p>	
<p>관련부처 담당자</p>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이주석 사무관(044-215-4133)</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p>	<p>장기검토</p>
	<p>검토내용</p>	<p><input type="checkbox"/>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p> <p>○ 이에 따라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12·'13년 최저한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최저한세율은 비과세·감면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추진완료 예정일</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추진일정</p>	<p><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과제번호 14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기금 출연의무 적용 제외 또는 요율 경감	
관련부처 담당자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이종림 사무관(02-2156-9752)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 출연료 제도는 ① 보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②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신기보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 중 <input type="checkbox"/>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국내은행, 국외은행 차별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은행이 취급한 “여신”에 동등하게 부과 중 <input type="checkbox"/> 또한, 전술한대로 출연료는 보증에 대한 비용의 성격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이 모두 있는 만큼 출연료 면제, 보증대출 비례 출연료 수취 등은 수용 곤란 ○ 참고로, 현재도 기술금융 실적 등으로 출연료를 가감하는 등 출연료 차등 부과 제도는 일부 도입하고 있음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15	예금보험료를 경감 및 외화예금의 적용 제외	
관련부처 담당자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안남기 사무관(02-2156-945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예금보험료를 경감 문제) 향후 금융회사 부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안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금적립을 통한 손실부담능력 확보가 중요하므로 기금의 주요 자원인 예금보험료의 경감은 수용하기 곤란함</p> <p>○ 또한, 예금보험료를* 경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금융업계에서 공동으로 부담기로 한 금융구조조정 관련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의 자원 마련을 위한 부담을 국민(세금)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p> <p>* (은행) 특별기여금 : 0.1%, 예금보험료 : 0.08%</p> <p>□ (외화예금의 적용 제외) 은행의 외화 예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은행의 원화 예금 및 다른 금융업권의 외화표시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가 정책적 사항으로 외화예금의 적용 제외는 수용할 수 없음</p> <p>○ 참고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중국 등 많은 국가가 외화예금을 보호하고 있음</p>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과제 번호16		비상장, 단일주주인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면제하거나 최대주주 또는 계열사의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
관련부처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 준 사무관 02-2156-971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 보호”</p> <p>→ 지배구조법은 현행 개별 금융업권상 지배구조 규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p> <p>□ ① 금융시장·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 금융회사간 형평성, ③ 현행 규제 수준과의 비교, ④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건의내용은 수용 곤란</p> <p>① 일정 규모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는 주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금융소비자에도 영향을 미침 → 이사회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을 제고하는 등 지배구조의 투명화·건전화 중요</p> <p>②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선임 관련 조항은 금융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여전사 등에도 적용 →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면제 등은 형평성 논란 우려</p> <p>③ 지배구조법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외이사 선임과 유사한 수준 →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p> <p>④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므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최대주주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 곤란</p>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17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내용 개정(출력 업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감독권 강화)	
관련부처 담당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고선영 사무관 02-2156-9932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정보처리 위탁규정은 금융회사 등이 정보처리를 위탁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절차적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개정. 시행(‘15.7)하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건의한 ‘출력’이 여타 IT기반 정보처리 행위(정보의 생성, 저장 등)에 비해 정보유출 위험이 높으므로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국외에서 ‘출력’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비용 등을 고려시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력’만을 제한하도록 위탁규정을 개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li> </ul>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18	<p><b>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b></p> <p>(‘15.9월 금융위는 외은지점의 경우 본지점 장기차입금(계약만기 1년초과)은 예수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既 발표하였으나, 시행 시기가 불명확)</p>	
관련부처 담당자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윤희 사무관(02-2156-9812)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 용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제1항제3호) 개정 중</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p><input type="checkbox"/> 규정변경예고 : '16.4.14~5.4</p> <p><input type="checkbox"/> 자체규제심사 및 규개위 심사 : '16.5월~6월 초</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 의결 : '16. 6월 중</p> <p><input type="checkbox"/> 시행 : '16.7.30</p>
	추진완료 예정일	'16. 6월 중
	추진일정	

과제번호 19		국내 외화실수요를 위한 외화대출 용인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김상엽 사무관(044-215-4751)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서만호 차장(02-759-5762)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외화대출 용도제한은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로 현시점에서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외화차입은 금융불안 시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li> <li>○ 특히,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금융·경제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할 때 만일 외화대출 규제 완화가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경우 대외부문 취약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음</li> <li>○ 또한, 국내기업 입장에서도 원화용도 외화대출 시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위험 노출 등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음</li> </ul> <input type="checkbox"/> 다만,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 대출한도 내에서 국내 시설자금에 대해 외화대출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의 직접 차입이 어려운 점과 국산설비산업의 육성 필요성 등을 감안</li> </ul>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20	선물환포지션 한도규제 완화·폐지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김상엽 사무관(044-215-4752) 임재정 사무관(044-215-4751)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검토 중
	<input type="checkbox"/> 선물환거래 관련 단기외채 증가 등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하고 외환부문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10년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 외은지점의 경우 주로 해외본점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내은행에 비하여 한도 설정에 있어 특례를 인정(국내은행 : 자기자본의 30%, 외은지점 : 자기자본의 150%)  ○ 그 결과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하는 등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  <input type="checkbox"/> 다만, 美금리인상 및 中경기둔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  ○ 선물환 포지션 제도를 포함한 거시건전성 조치 전반에 대해 개편방안을 검토 중
추 진 계 획	<input type="checkbox"/> 은행, 증권사, 종금사 대상 건의사항 취합  ○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제도 개편에 참조  <input type="checkbox"/>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으로 구성된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T/F」를 운영하여 제도 개편 논의
	추진완료 예정일 '16년 6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T/F」 운영('16.1월 ~) <input type="checkbox"/> 은행, 증권사, 종금사 대상 건의사항 취합('16.2월)

과제번호 21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폐지·완화 등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김상엽 사무관(044-215-4752) 임재정 사무관(044-215-4751)													
검토의견	검토결과	既수용													
	검토내용	<p>□ 국외 본지점으로부터 외화차입 비중이 높은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은지점의 본지점 장기차입금(을기금 인정분)은 자본금으로 의제하여 부과대상 부채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설계 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既 반영하고 있음</li> </ul> <p>□ 또한, SJC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5년 상반기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방식 및 부과요율 개편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부담금이 경감</li> <li>○ 또한, 非예금성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에 따라 할인율을 차감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본지점 외 장기차입금 비중을 늘릴 경우 부담금을 낮출 수 있음</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5%;">개편 前</th> <th style="width: 45%;">개편 後</th> </tr> </thead> <tbody> <tr> <td>부과 기준</td> <td>계약만기</td> <td>잔존만기</td> </tr> <tr> <td rowspan="4">부과 요율</td> <td>만기 1년 이하 : 20bp</td> <td rowspan="4">잔존만기 1년 이하의 非예금성외화부채에 10bp로 1회 부과  - 각 금융사의 비예금성외화부채 가중평균만기에 따라 10bp에서 기간별 할인율*을 차감하여 적용  * 가중평균만기별 2bp~4bp</td> </tr> <tr> <td>1년 ~ 3년 이하 : 10bp</td> </tr> <tr> <td>3년 ~ 5년 이하 : 5bp</td> </tr> <tr> <td>5년 초과 : 2bp</td> </tr> </tbody> </table>			개편 前	개편 後	부과 기준	계약만기	잔존만기	부과 요율	만기 1년 이하 : 20b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非예금성외화부채에 10bp로 1회 부과  - 각 금융사의 비예금성외화부채 가중평균만기에 따라 10bp에서 기간별 할인율*을 차감하여 적용  * 가중평균만기별 2bp~4bp	1년 ~ 3년 이하 : 10bp	3년 ~ 5년 이하 : 5bp	5년 초과 : 2bp
		개편 前	개편 後												
	부과 기준	계약만기	잔존만기												
부과 요율	만기 1년 이하 : 20bp	잔존만기 1년 이하의 非예금성외화부채에 10bp로 1회 부과  - 각 금융사의 비예금성외화부채 가중평균만기에 따라 10bp에서 기간별 할인율*을 차감하여 적용  * 가중평균만기별 2bp~4bp													
	1년 ~ 3년 이하 : 10bp														
	3년 ~ 5년 이하 : 5bp														
	5년 초과 : 2bp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2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거래시 헤지비율 100% 이내 여부 전수 사전 확인 의무 완화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태현수 사무관(02-2156-973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p>□ 동 규제는 '08년 수출입 기업들이 과도한 환헤지 거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키코(KIKO)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0.1월 도입**</p> <p>* '10.6월말 기준, 키코계약 거래기업 수 및 손실규모 : 738개사 / 3.2조 원</p> <p>**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lt;별표15-2&gt;) 제정·시행</p> <p>□ 동 규제를 통해 기업 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위험회피 대상금액(수출입 실적 등)의 100% 이내로 제한하여</p> <p>◦ 기업투자자의 중복·오버헤지* 등 과도한 환헤지 거래와 투기적 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p> <p>* (예시) '08.9.16. 법정관리를 신청한 태산 LCD는 수출대금 대비 500% 환헤지 계약 체결</p> <p>** 13년 전수조사시 기업의 외환파생상품거래 헤지비율: : 매입관련 33.4%, 매도관련 34.5%</p> <p>□ 추가 헤지수요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기초거래에 대한 증빙을 징구받아 심사 후 한도증액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시</p> <p>◦ 동 규제가 기업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수출입 기업의 영업활동 및 헤지거래를 과도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p> <p>○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중복·오버헤지 여부를 전수로 사전 확인하여 수출입기업들을 예상치 못한 환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방지하는 규제의 취지 등을 고려시 건의사항 수용 곤란</p>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 <b>현행 유지</b>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 번호 23	교육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 도입(또는 회계기간별 과세로 전환) 및 현물금융상품 거래손익과 금융파생상품 거래손익의 통산허가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김웅 주무관(044-215-4236)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수용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수용) 개정된 세법('15.12.29.)에 의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은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로 변경하였고,</li> <li>○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변경하여 과세연도별 과세로 전환</li> </ul> <p>* 동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어, '16년부터는 분기별 결손금은 과세기간 내에 이익에서 상쇄됨</p> <p><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현물금융상품 거래손익과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헤지거래와 투기목적 거래 구분이 되지않아 손익을 통산하기 어려움</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24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규제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김동현 사무관(02-2156-9874)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매매시 충분한 영업용 순자본을 보유하도록 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규제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국내에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일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결제위험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회사의 대량손실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므로 중앙청산시스템을 이유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 순자본 규제를 완화하기는 곤란함  <input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위험액 한도 완화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25	무효심판·소송시 이유 및 증거 보충의 제한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윤기웅 사무관(042-481-5397)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현재 장기과제로서 특허무효심판·소송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임</p> <p>○ 검토사항에는 모든 증거를 심판단계에서 제출하게 하고 법원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며,</p> <p>○ 무효심판의 청구 이유 및 증거 보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임</p> <p><input type="checkbox"/> 다만, 법률적 타당성 검토, 대내외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과제이므로,</p> <p>○ 정책연구용역, 기업 및 관련 부처 의견문의 등의 과정을 거쳐 특허법 개정을 검토하겠음</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미정
	추진완료 예정일	미정
	추진일정	미정

<p>과제번호 26</p>	<p><b>판례에서 인정된 사항의 명문화</b></p> <p>① 권리범위의 해석원칙의 명확화</p> <p>② 침해소송시 무효항변 인정의 입법화</p>	
<p>관련부처 담당자</p>	<p>특허청 심판정책과 유철중 사무관(042-481-5918)</p>	
<p>검 토 의 건</p>	<p>검토결과</p> <p>수용곤란</p>	
	<p>검토내용</p> <p>① 권리범위의 해석원칙의 명확화</p> <p><input type="checkbox"/> 비록 특허법에 명세서 참작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를 기초로 정하여지고</p> <p>○ 판례에 따라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제한 해석할 수 없고(대법원 2010후2605 판결)</p> <p>○ 불명확한 경우 명세서를 토대로 해석하여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 없음</p> <p>② 침해소송시 무효항변 인정의 입법화</p> <p><input type="checkbox"/> 특허법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 없음</p> <p>○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행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p> <p>○ 향후 문제 사례 발생 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추진완료 예정일</p>	
	<p>추진일정</p>	

과제번호 27		상표의 선후원 관련규정 적용의 판단시기 개선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이형원 사무관(042-481-5377)
검토 의견	검토결과	수용(2016년 9월 1일 시행예정)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선등록 상표와 후출원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 변경  <input type="checkbox"/> 서울재팬클럽의 건의사항인 선등록 상표와 후출원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의 변경(출원시→결정시)은 '16년 2월에 공포된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에 이미 반영되었음  <input type="checkbox"/> 동 개정법률은 '16년 9월 1일 시행예정임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공포된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세부추진계획 불필요
	추진완료 예정일	'16년 9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없음

과제번호 28	수출에 대한 권리행사의 가능화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윤기웅 사무관(042-481-5397)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에 관한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청약하는 행위는 침해로 봄</p> <p>○ 또한, 수출의 전제 행위인 생산·사용·양도 행위는 특허권 침해 행위이므로 특허법에 따라 권리행사 및 사전 예방 가능</p> <p><input type="checkbox"/>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 행위 중지 가능</p> <p>○ 다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 행위 제제는 가능하나, 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특허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수출 행위를 침해로 볼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검토하겠음</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미정
	추진완료 예정일	미정
	추진일정	미정

<p>과제번호 29</p>	<p><b>특허법을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b></p>	
<p>관련부처 담당자</p>	<p>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구자욱 사무관(042-481-8243)</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p>	<p>장기검토</p>
	<p>검토내용</p>	<p> <input type="checkbox"/>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 보호 대상이 아니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아이디어, 알고리즘)은 현행 특허법에서도 특허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음         </p> <p> <input type="checkbox"/> 미국, 유럽 등 컴퓨터관련발명에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도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함         </p> <p> <input type="checkbox"/> * 통상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을 보호         </p> <p> <input type="checkbox"/> 다만, 특허발명을 특허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에 사용한 경우, 그 프로그램을 네트워크를 통해 기록매체 없이 유통할 경우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것도 사실임         </p> <p> <input type="checkbox"/> * 한편, 그 프로그램을 오프라인(CD 등)으로 유통하면 특허 침해         </p> <p>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에 특허발명을 무단 사용했다면, 프로그램의 유통 경로가 다르더라도 똑같이 특허로 보호되어야함         </p> <p> <input type="checkbox"/> 이에 대해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         </p> <p>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상황,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미정</p>
	<p>추진완료 예정일</p>	<p>미정</p>
	<p>추진일정</p>	<p>미정</p>

과제번호 30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의 답변기간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기간의 장기화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강원길 서기관(042-481-5398)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과 불복신청 등의 기본기간이 장기화되거나 및 지정기간이 자동 연장되면,  ○ 심사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권리 불확정기간이 장기화되어 제3자의 감시 부담도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의 경우 일본, 미국 등과 동일하게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리인 변경, 시험기간 소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함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미정
	추진완료 예정일	미정
	추진일정	미정

과제번호 31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윤기웅 사무관(042-481-5397)
검 토 의 건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p>□ 간접 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 및 특허분쟁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p> <p>○ 따라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측면, 특허권자와 제3자의 형평성 측면, 국제적 조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미정
	추진완료 예정일	미정
	추진일정	미정

과제번호 32	고객요구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제품(파생제품)의 KCs마크 인증제도(신청자료)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임금주 사무관(044-202-7726)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p>□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조(수입)자 스스로 형식(규격), 용량(등급)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p>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자에게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p> <p>○ 다만,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품의 형식 및 용량이 다른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나,</p> <p>- 안전성능에 영향이 없는 구조 또는 치수 등의 변경은 관련 고시*에 따라 신고수리기관을 통해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음</p> <p>*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항</p>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33	위해우려제품 인증취득 완화 : 위해우려제품 성분내역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3년 주기의 갱신제도를 폐지	
관련부처 담당자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김종민 사무관(044-201-6773)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화학제품에 대한 기업의 품질관리를 종전의 품 공법에 따른 KC 자율안전확인제도 보다 과학화·합리화한 제도</p> <p>○ 소비자·국민이 화학제품 사용시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해도에 따라 제품 내 유해물질 기준 (최대함량, 사용금지 등)을 설정</p> <p>○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자는 기존 KC 제도와 유사하게 제품 출시 전에 스스로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이후 3년 마다 확인)하고, 제품 포장에 표시기준에 맞는 사항을 표시하여 출고해야 함</p> <p>- 다만, 종전 KC 제도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국가기술표준원에 신고를 하고 나서 KC 번호를 부여받아 판매 하도록 하였으나, 現 제도는 별도 인증을 위한 신고제도는 폐지하는 등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려</p> <p>⇒ 3년마다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소비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p> <p>□ 제품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며, 시험분석 기관을 통한 확인은 제품 품질관리에 있어 최소한의 공공적 강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므로 현행 시험분석기관을 통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할 필요</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없음
	추진일정	해당없음

과제번호 34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대상 시료 재취기준 확대	
관련부처 담당자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선근 사무관(043-870-5445)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현황) 중고복사기 수입시 수량과 관계없이 모델별로 검사시료 1대를 채취하여 안전검사를 실시</p> <p>* 신제품의 안전인증시에도 안전인증용 시료 1대를 채취하여 시험실시</p> <p><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기업의 시험인증 관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수용 곤란</p> <p>○ 현재 제품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기하는 것임</p> <p>○ 중고 복사기의 경우, 전기적 위해도가 크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을 강화하지 않고도 규제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시험 샘플수 증가는 오히려 기업의 시험인증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현행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는 조치임</p> <p>○ 또한, 위해제품 발생시 중점관리대상 지정 또는 사후 시판품 조사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한 바, 현행 규정제도 유지 필요</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 해당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 해당 없음
	추진일정	○ 해당 없음

과제번호 35	교체형 카트리지를 환경성 보장제 대상에 포함	
관련부처 담당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손병용 사무관(044-201-7386)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한국은 전기. 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기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제정('08.1.1 시행~)하여,</p> <p>*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p> <p>○ 현재 27개 품목('14년 확대, 종전 10개)에 대하여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재활용 및 회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p> <p>○ 제품 내에 포함된 카트리지, 정수기 필터 등의 소모품은 완제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소모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의무대상이 아님</p> <p><input type="checkbox"/> 또한, 폐기물부담금에서 환경성보장제로 전환되는 품목은 재활용 가능성 외에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여부 등 현실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p> <p>○ 동 과제 건의업체의 경우 카트리지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동종의 다른 대부분의 업체들은 미구축 상태임</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카트리지 등의 소모품의 환경성보장제 전환시기는 회수.재활용체계 구축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임</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36	법정 계량단위 표기 개선	
관련부처 담당자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 배승호 연구사(043-870-5516)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교역기반을 마련하고자, '61년 국제단위계(미터법)를 채택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로 명시된 단위를 계량기와 상품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p> <p>○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도 인치, 파운드 등 비법정단위 사용을 조속히 금지하도록 규정</p> <p>○ 또한, 미국, 라이베리아, 미얀마 3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국제단위계를 공식 채택 중(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p> <p>* OIML: 현재 60개 정회원국과 68개 준회원국이 활동 중인 정부간 국제기구</p> <p>□ 정부는 WTO/TBT(국제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OIML 국제기준인 미터법 사용을 정착시키고자, 모니터링·홍보·계도·단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p> <p>○ 만약 국내 유통판매되는 수입 계량기 및 상품에 대해서 법정단위 사용의 예외를 적용 할 경우, 국내기업의 역차별 야기</p> <p>□ 정확성, 안전성, 편리성에 기반을 둔 법정단위 사용이 정착되어 한국의 산업 선진화와 국민경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본 기업들의 협조 필요</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 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 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 사항 없음

과제번호 37	전기제품의 KC 인증취득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안광희 연구관(043-870-5441)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 수용
	검토내용	<p>[해외에서 인증을 취득한 수입제품의 KC인증 철폐] : 불수용</p> <p><input type="checkbox"/> (현황) 해외 인증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재인증 필요</p> <p><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국가간 전기적 사용상의 차이가 있어 현행유지 필요</p> <p>※ 타국의 안전인증을 인정해 주는 국가는 없으며 본 문제는 FTA/TBT 등 국가 또는 국제 간 호혜주의 원칙 하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p> <p>○ 전기용품은 전압·주파수 등 사용전원에 따라 안전성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바, 타국의 인증을 그대로 수용하는 국가는 없음</p> <p>- 미국:UL, 유럽:CE, 일본:PSE, 중국:CCC 등 각국 인증제도 운영</p> <p>○ 다만, KC인증기관은 32개국 53개 시험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시험시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p>
		<p>[HSK품목 대상 확대 및 KC인증유무 철저한 조사] : 기수용</p> <p><input type="checkbox"/> (현황) HSK 품목 대상을 관세청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통관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대부분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에 포함되어 있고, 관세청에서 KC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본 제안은 기수용한 사항임</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 해당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 해당없음
	추진일정	○ 해당없음

과제번호 38	임대계약 시의 위약금비율 규제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유진 사무관(044-200-4455)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약관심사지침 IV-4. 나 (2)*의 의미는 약관의 형식으로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과다하다는 뜻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님</p> <p>*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 예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는 계약기간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에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총액이라 할 것이고 위약금은 임대료 총액의 10% 수준이 적정하다고 할 것임에도 임대보증금의 10%를 임차인의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p> <p>○ 대법원도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계약조항은 과중하여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17. 선고 2011가합882 판결)한 바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표준약관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p> <p>○ 다만,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할 여러 사정 중의 하나로 표준약관을 참작할 수 있음</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3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프린터 안전확인 면제 기준 개정	
관련부처 담당자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선근 사무관(043-870-5445)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 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현황) 대형프린터는 감전·화재 등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안전확인 신고를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설비(또는 시설)로 간주하여 안전관리를 면제하고 있음</li> </ul>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전기용품 업계간담회(‘16.2.3)”에서 건의되어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면제를 추진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실적, 안전관리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대형프린터는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2.15일 전문가 회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외될 대형프린터의 기준은 정격용량 3kVA 초과 제품으로 후지제록스, 캐논 등 관련업체도 논의결과를 수용함</li> </ul>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추진(‘16.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2] 프린터 ‘비고’ 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 추가</li> </ul>
	추진완료 예정일	’16년 상반기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전기용품안전관리 운용요령 입법예고(‘16. 3~5월) <input type="checkbox"/> 특이 이견이 없을 시 시행(‘16. 상반기)

과제번호 40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에게 사실 확인 후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개선	
관련부처 담당자	공정회 기업거래정책과 이서연 행정주사(044-200-4593)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 곤란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하도급법은 그 규율대상(하도급법 위반행위 주체)을 원사업자로 하는 바, 수급사업자는 단지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반협의 내용을 알려주는 입장으로 조사에 응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점,</p> <p>○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의 범위반협의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수급사업자 신원이 원사업자에게 노출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 조사를 현행 보다 강화(1회→2회)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위반협의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p> <p>○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에 대해</p> <p>- 원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위반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내부 사건처리절차규칙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있음</p> <p>* 원사업자가 범위반협의를 불인정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된 경우 시정조치 함</p> <p>○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범위반협의를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런 절차없이 원사업자에 시정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음</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41	<p><b>‘ECO마크’ 인증제도 재검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표지 대상제품군 중 타 국에서 제외하고 있는 ‘디지털 프로젝터’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재검토하여 대상에서 제외</li> <li>- 인증기준 재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환경과 관계없는(품질기준) 심사기준은 재검토</li> </ul>	
관련부처 담당자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조용재 주무관(044-201-6670)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b>&lt;대상제품군 제외 요청 관련&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디지털 프로젝터’는 독일·북유럽 등 주요 해외 환경라벨링제도에서도 대상제품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은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중일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회의’를 통하여 ‘디지털 프로젝터’에 대한 3국 공통기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15.4)하여 운영 중임</li> </ul> </li> <li>* CJK-06-2015(A)</li> <li><input type="checkbox"/> 따라서, 미국·싱가포르 등 민간 운영 중심의 환경마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일부 국가의 사례에 따른 대상제품군 폐지 검토는 <b>수용곤란</b></li> </ul> <p><b>&lt;품질기준 설정 관련&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ISO 14024*에 따라 제품 전 과정을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제품 기능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운영 중이므로 품질기준 제외 검토는 <b>수용곤란</b></li> <li>* ISO 14024(환경성 표시 및 주장 - 제1유형 환경성 표시 - 원칙 및 절차)</li> <li>○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품질 관련 기준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품질확보 및 보호를 위해 사용적합성을 규정한 한국산업표준(KS) 등을 준용하고 있음</li> </ul>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42	<b>K마크 인증제도 재검토</b>	
관련부처 담당자	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 승헌배 사무관(02-2100-396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문현철 주무관(044-203-4536)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b>(K마크 현황)</b>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인증제도*로서 정부가 폐지. 통합할 권한이 없음</p> <p>*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제품의 품질 인증을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1991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p> <p>○ 조달시장 등 공공 입찰시 K마크 인증품에 대한 가점부여로, 기업입장에서는 필수인증으로 인식하고 있음</p> <p>* 조달청: 다수공급자 입찰경쟁시 K마크에 3.5점 가점 부여</p> <p>* 행정자치부: 자체 발주 행정 사무기기 입찰시 K마크 취득 필수조건</p> <p><input type="checkbox"/> <b>(요청사항)</b> K마크 인증제도 공공입찰 조건 배제 희망</p> <p><b>① 조달청</b></p> <p>○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를 통해 K마크 인증품에 대한 조달청 가점제도는 ‘17.1.1.일부부터 폐지</p> <p><b>② 행정자치부</b></p> <p>○ 부처간 협의를 통해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를 준용하여 자체 발주 사무기기의 필수조건 폐지를 검토기로 협의</p>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K마크에 대한 조달청가점제도 폐지 결정(‘15.11.6.)</p> <p>○ ‘17.1.1.일부부터 시행 예정</p> <p><input type="checkbox"/> 행정자치부 자체 발주 사무기기 필수조건 폐지 협의(‘16.4)</p>
	추진완료 예정일	<p><input type="checkbox"/> 조달청 가점제도 폐지 : ‘17년 1월</p> <p><input type="checkbox"/> 행자부 필수입찰조건 제외방안 확정 : ‘16년 하반기</p>
	추진일정	<p><input type="checkbox"/> K마크에 대한 조달청 가점제도 폐지(‘17.1.1.)</p> <p><input type="checkbox"/> K마크에 대한 행자부 필수입찰조건 타당성 협의(‘16.5)</p>

과제번호 43		IT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
관련부처 담당자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최영훈 사무관(044-215-4453)
검 토 의 건	검 토 결 과	수용곤란
	검 토 내 용	<p>□ 우리나라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문에 따라, WTO에 IT양허품목 대상을 제출하였고, WTO 검증결과를 WTO양허관세율표에 최종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음</p> <p>○ 건의사항에서 언급된 플랫패널 디스플레이방식의 프로젝터 등은 우리나라의 ITA 양허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ITA품목의 세율적용이 곤란함</p> <p>* 컴퓨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플랫패널 디스플레이방식의 프로젝터만 ITA 관세양허품목에 포함됨</p> <p>○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비디오·DVD 등 다양하게 입력되는 데이터의 투사 기능을 갖춘 것은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로 인정 불가(2011두23535 판결)</p>
추진 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44	<b>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완화</b> (보고서 양식의 간소화, 기업비밀 보호, 가이드라인 작성, 정의의 명확화 등 기 반영한 내용 뿐 아니라, 지속 개선 노력)	
관련부처 담당자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원혁 사무관(044-201-6771)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환경부는 그간 반영한 사항 뿐 아니라,  <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화평법 운영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 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45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환경부 화학안전과 강경록 사무관(044-201-6837)	
검토의견	검토결과	부분 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현재 국조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T/F팀」 구성·운영(1~6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계의 애로사항 발굴과 내부 검토를 통해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괄 규제개선 예정</li> </ul> <input type="checkbox"/>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안건 발굴 및 논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팬클럽과는 금번 건의내용이 포함된 건의과제 25건에 대해 기 설명(2.3)</li> <li>○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3.17), 석유업계(3.22), 중소기업(3.24, 도금·염료 등), 석유화학업계(4.5) 등</li> </ul>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관계부처 합동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16.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산업계/환경단체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 검토, 외부회의 보고 등을 통해 확정 예정</li> </ul>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정 개정('16.하반기)
	추진완료 예정일	'16년 12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16.상반기)

과제번호 46	<p>각 약가인하제도의 운용 개선,          사용량 약가 연동제와 실거래가제 중복 조정</p>	
관련부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영삼 사무관(044-202-2751)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보험등재 이후 약가결정에 관련된 <b>사실의 변동을 반영</b>하여 약가를 재설정하기 위해 약가 사후관리 제도 실시</p> <p>○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b>실거래가제, 사용량-약가 연동제</b> 등 사후관리 실시</p> <p><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약가인하 제도 조정 등 보험약가 제도개선 추진 중, 이를 위해 '건강보험약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중('16.2월~)</p> <p>* 정부, 유관기관, 제약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실무회의 운영(전체회의 1회, 실무회의 2회, 현장 간담회 1회 개최)</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p><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협의체' 운영('16.2~10월)</p> <p>○ 협의체에서 '사후관리 약가인하 제도 조정 방안' 논의('16.7~10월)</p> <p>○ 제도개선 방안 마련(~10월), 법령 개정('17.상반기)</p>
	추진완료 예정일	○ 제도개선 방안 마련(~10월), 법령 개정('17.상반기)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협의체' 운영 <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논의('16.7~10월)
--	------	--

과제번호 47	<b>A7 조정가 산출방식 개선</b> (부가가치세 중복계산 등 합리적 개선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지혜 사무관(044-202-2753)	
검토의견	검토결과	부분 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A7 조정가 산출방법의 개선방안 마련 예정  <input type="checkbox"/> 외국 7개국의 약가 구조 검토 연구용역('15.12~) 수행  * 국가별 약가에서 부가가치세, 약국마진, 도매마진, 조제료, 공식 리베이트 포함여부 및 비율 도출 등  ** 건의사항에 해당하는 일부 국가의 부가가치세 중복 계산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예정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 완료('16 상반기)  <input type="checkbox"/> A7 조정가 산출방법 개선방안 제약업계 의견수렴('16년 하반기)  <input type="checkbox"/> 기준 개정 및 시행('16년 하반기)

	추진완료 예정일	'16년 내
	추진일정	

과제번호 48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의 부대조건 삭제 필요
관련부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지혜 사무관(044-202-2753)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부분 수용
	검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조건별 검토의견</li> <li>○ (총액제한 삭제 요청 관련) 수용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환자 수가 소수로 근거생성이 곤란하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으나,</li> <li>-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환자수 산출은 예상추계로 불확실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액제한 부대 조건을 통해 등재 이후 일정기간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가 필요</li> </ul> </li> <li>○ (적응증 추가시 제한년수 관련) 장기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사의 제도 이용 측면을 고려 일정기간 기준 확대 제한 중이나, 환자접근성 등을 고려 개선방안 마련 예정</li> </ul> </li> </ul>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경평면제 약제 급여기준 확대 대상, 방법, 절차 마련('16년하반기)
	추진완료예정일	'16년 이내
	추진일정	
과제번호 49-1		<b>의약품거래 관련 공정경쟁규약의 상시개정체계 구축</b>
관련부처담당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044-202-2487)
검토의견	검토결과	旣수용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 관련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중('15.下~) * 복지부,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참여 ○ 동 협의체를 통해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관련 유통 질서 전반에 대한 논의 진행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공정경쟁규약 개정 추진 ○ 동 협의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협회 소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공정위 심사 의뢰

	추진완료 예정일	'16년 5월
	추진일정	<input type="checkbox"/>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공정위 심사 요청('16.2월)  <input type="checkbox"/> 공정경쟁규약 관련 교육, 설명회 등 개최('16.上)

과제 번호49-2	의약품거래 관련 공정경쟁규약의 상시개정체계 구축	
	관련부처 담당자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임선정 사무관(044-200-4518)
검	검토결과	부분 수용

<p>토 의 견</p>	<p>검토내용</p>	<p>□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정경쟁규약 상시개정체계를 구축하여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p> <p>* (공정거래법) 제23조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5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승인하는 역할 수행</p>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p>□ 해당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한 심사 요청시 신속하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p> <p>* 현재 한국제약협회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내부적으로 업계현실 등을 반영하여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마련 중</p>
<p>추진완료 예정일</p>	<p>-</p>	
<p>추진일정</p>	<p>-</p>	

<p>과제번호 50</p>	<p><b>대한민국 산업별(제약업) 공식 CP(Compliance Program) 인증(자격증)제도 도입</b></p>
<p>관련부처 담당자</p>	<p>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044-202-2487)</p>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장기검토
	검토내용	<p>□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및 등급평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p> <p>○ 전 산업대상의 CP인증제 도입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동 논의 결 과에 따라 제약분야 추진 여부 결정 필요</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51	후발의약품 발매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규정 신설 조항 삭제	
관련부처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영삼 사무관(044-202-2751)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
	검토내용	<p>□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 삭제('16.1.8)</p> <p>○ 특허권자의 부당한 판매금지 신청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예방을 위해 허가특허 연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p> <p>-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됨</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과제번호 52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Patent linkage)의 문제점 개선 <b>【계속】</b>
관련부처 담당자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박현정 사무관(043-719-2823)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 판매금지 신청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경우 판매금지 거부 조항 삭제 요청</p> <p>○ (요청사항) 약사법상 서로 동일한 의약품인 경우에도 특허 침해 여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의약품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판매금지 제외되는 것은 부당</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50조의6(판매금지 등) ① 제50조의5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0조의4에 따라 등재특허권자등이 통지받은 날(이하 "통지받은 날"이라고 한다)부터 9개월 동안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중 략&gt;</p> <p>6. 판매금지가 신청된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으로서 이미 등재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 존재하는 경우</p> </div> <p>* 관련 규정 「약사법」 제50조의5제1항제6호</p> <p>○ (검토의견) 동 규정은 이미 후발의약품이 출시되었음에도 특허권자 등이 재량을 남용하여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p> <p>- 이에, 판매금지 신청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금지 되지 않도록 함</p> <p>* 동일의약품은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서로 동일한 의약품</p>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
	추진완료 예정일	-
	추진일정	-

과제번호 53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적정화 및 IMD의 폐지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최원철 사무관(042-481-5578)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부분적 효력범위의 적정화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받은 화합물이 특허청구범위 화합물에 속하는지(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법 제90조(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에 의한 연장등록 출원 시 유효성분은 허가받은 형태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li> <li>○ 특허법 제95조(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의 해석 및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결과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함.</li> </ul>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54	특허권 존속연장제도에 있어 외국 임상시험기간의 기산	
관련부처 담당자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최원철 사무관(042-481-5578)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출원에 있어 연장기간 산정시 외국 임상시험기간 인정 여부 검토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는 국내에서 특허권의 실시가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하는 경우,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5년의 한도 내에서 연장해주는 제도로, 특허법상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규정임</li> <li>○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 임상시험기간은 국내 의약품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임.</li> <li>○ 외국에서의 임상시험은 해당국의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시험이 아니므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li> </ul>
추 진 계 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p>과제번호 55</p>	<p>서울 시내 및 주변 고속도로 정체 완화와 대기오염 억제</p>
<p>관련부처 담당자</p>	<p>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권호정 사무관(044-200-3826)</p>
<p>검 토 의 견</p>	<p>검토결과      부분수용</p>
	<p>검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대당 최소 승차인원 제한과 시내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요금인상 등의 조치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li> <li>○ 대당 최소 승차인원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따른 다수 민원 등이 예상되므로 수용이 곤란하며, 시내 주차요금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 사무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함이 타당</li> <li>○ 고속도로 통행료는 `15.12.29일자로 4.7% 인상</li> <li><input type="checkbox"/>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기관의 확대 추진</li> <li>○ 철도는 신분당선 연장(`16.2), 수서발 KTX 개통(`16.8), 성남 여주선(`16.下) 등이 개통 예정 중이며,</li> <li>○ 버스도 M-버스 중심으로 신규노선 확충, 교통사각 지대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을 지속 추진</li> <li>○ 택시도 고급택시, 승합택시 등 상품 다양화 추진 중</li> </ul>
<p>추 진 계 획</p>	<p>세부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 계획된 일정대로 대중교통 확충 지속 추진</li> <li><input type="checkbox"/>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17~`21) 및 대중교통 현황조사(매년)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방향 설정 후 추진</li> </ul>

	추진완료 예정일	<input type="checkbox"/> 계속 추진
	추진일정	

과제번호 56	<b>학원법 규제 완화</b> (예술·체육분야의 수강료 조정명령제도 철폐 또는 완화)	
관련부처 담당자	교육부 학원정책팀 강양은 사무관(044-203-6380)	
검 토 의 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p><input type="checkbox"/> 교습비 조정명령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교육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예술·체육분야만 수강료 조정명령제도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하는 특정한 이유가 없음.</p> <p>○ 교습비 조정명령제도는 원칙적으로 교습비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명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있음</p> <p>※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p> <p>○ 교습비 조정명령제도에 관하여 법원에서 그 취지를 긍정</p> <p>※ 조정명령제도는 수강료의 고액화를 방지하고 사교육에서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55195)</p>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해당사항 없음
	추진완료 예정일	해당사항 없음
	추진일정	해당사항 없음
과제번호 57	<b>일본 제품의 수입통관 시 샘플 제출에 관한 개선</b>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를 완화해 줄 것)	
관련부처 담당자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오재준사무관(044-719-2160) 검사실사과 송상길사무관(044-719-2230) 검사실사과 강성필사무관(044-719-2223)	
검토의견	검토결과	수용곤란
	검토내용	<input type="checkbox"/>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3) 이후 일본산 수입식품(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한 바 있음  <input type="checkbox"/> 앞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지속 실시되어야 함
추진계획	세부추진 계획	

	추진완료 예정일	
	추진일정	